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 가족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박종렬O
O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park3822@kwu.ac.krO

# A Study o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Family Law

Jong-Ryeol ParkO
O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 약 ●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 상속재산(Inherited Property), 상속제도(Inheritance System), 부부재산제(Couple Property System), 배우자상속(Spouse Inheritance)

## I. Introduction

배우자는 현행 가족법상 1, 2순위 상속인들과 동순위로 상속받고, 또한 다른 상속인에 비해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더 받게 된다[1]. 이에 따라 혼인 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일반적으로 일방배우자(남편)의 명의로 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일방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시 법정청산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공동체에서 수고한 부인의 가사노동의 기여도 평가는 물론 당연히 본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마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국 생존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한 자녀들에게 홀로 남은 생존배우자를 부양하도록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고, 또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가변적인 상속분으로는 도저히 남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현시점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은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본으로 했던 법제 하에서 오늘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직계비속들은 물론 양성평등을 반영한 균등한 상속제도속에서 산업화를 중심으로 생존배우자의 상속지위도 향상되었던 사실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어느 혈족보다는 피상속인과 밀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존배우자의 여생을 위해서는 직계비속들보다는 더 우대한 방향으로 상속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존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 한다.

## II. General Spouse Inheritance System

### 1. Significance of spouse inheritance

배우자란 혼인의 상대방으로서 피상속인과는 사망 전까지 매우 밀접한 관계로 혼인공동체를 함께 유지해온 당사자이다. 이처럼 배우

자는 피상속인과 관계에 있어서 혈족보다 더 친밀한 사이로 재산상속에서도 혈족관계가 아니면서 배우자에게 혈족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배우자인 부인의 평균 수명이 남편보다는 오래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핵가족으로 인한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무 의식이 빠르게 옅어지고 있는 작금시대에 생존배우자에게 배우자상속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 2. Causes of recognition of spouse inheritance

재산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과 사망 전까지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또한 배우자상속권의 변천과정으로 보아 부부재산제의 내용에 있어서 피상속인 사망에 의거 혼인 해소된 경우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거 제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은 부부공동생활에 비추어보면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재산인 경우라도 그 재산은 생존배우자와 함께 노력하여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숨어 있는 지분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혼인해소 시 청산절차를 거쳐 생존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3.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 3.1 Spouse Inheritance in 1960

1960년 제정민법에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인 부인의 상속분은 남자상속분의 1/2였고, 부인이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었다, 또 피상속인 즉, 부인이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라도 생존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때는 생존배우자가 부인이냐? 남편이냐?에 따라 변화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3].

#### 3.2 Spouse Inheritance in 1977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인 부인의 상속분이 증가하였으나, 그래도 이때까지 생존배우자가 남편 또는 부인인지에 따라서 상속분이 변화되는 차별적인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에 의거 귀속불명의 재산에 있어서 남편의 소유로 추정했던 규정을 부부공동소유로 개정하게 되어 부부간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도 있었다[4].

#### 3.3 Spouse Inheritance in 1990

1990년 가족법 전면개편이라는 명제아래 배우자인 처가 혈족상속인들과 공동상속 하는 경우 배우자인 처에게만 공동상속인의 1/2를 가산하는 규정을 생존배우자는 부부간에 차등 없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5]. 하지만 상속인의 실질적 평등 입장에서 도입된 기여분제도는 부인의 가사노동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관계로 생존배우자에게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III. Foreign Legislation on Spouse Inheritance System

### 1. England

영국에서는 생존배우자에게 재산상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생존배우자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과 생존배우자간의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무효판결의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배우자는 권리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기 때문이다. 생존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1995년도 상속법에 의하면 금전, 보험금과 사업상 목적으로 하는 물건 및 모든 인적동산은 절대적으로 상속받게 된다[6].

### 2.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기간 동안의 관대한 부양비와 택지입법을 통해 혼인주택에 대한 보호권, 또한 연방정부의 상속과 증여세법은 일방 배우자로부터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부분이 연방세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생존배우자에 대하여 배려가 없는 경우에 생존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7].

### 3. Japan

일본은 민법 제890조에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고, 혈족상속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고, 혈족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상속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900조에 혈족상속인 및 생존배우자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인정되고, 결국 어떤 상속인과 상속을 하든 상속재산의 1/2를 상속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904조의2를 조문으로 기여분을 입법하였고, 생존배우자 장, 단기 거주권을 신설하여 생존배우자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8].

### 4. France

프랑스는 상속법에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는 혈족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분 역시 어떤 자와 공동상속하는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이 특별하다. 또한 직계비속인 자녀가 혼인중인 자의 여부에 따라 생존배우자 상속분이 달라지며,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부와 모를 각각 나누어 배우자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9].

### 5. Germany

독일은 생존배우자에게 선취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상속제도에서 부부재산제도에 따라 배우자상속분이 크게 다른 점이

특색이다. 또 부부재산제에 의거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선취분청구권을 인정하는 등의 대책으로 배우자의 상속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10].

## IV.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pouse Inheritance on Civil Law

### 1. Problems with spouse inheritance

#### 1.1 Fundamental problems with current couple property system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적용되는 기여분제도가 전업주부로서 행한 가사노동이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배우자가 공동생활 중에 서로 간에 협력을 통한 형성한 재산을 유지 및 증가시킨 노력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함에 불구하고 부부별산제라는 이름하에 생존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도가 문제점으로 대두고 있다.

#### 1.2 The problem of inheritance interest for surviving spouses

현행법에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생존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 1.3 The problem of supporting old-aged surviving spouses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 생존권보장을 위한 노령의 생존배우자 부양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사회에 있어서는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하는 경우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존배우자로서는 홀로 남은 노후를 해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남자의 평균수명보다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배우자상속제도로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존배우자가 사후에도 혼인공동생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시켜야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 1.4 The problem of preoccupation with inherited property of surviving spouses

우리나라 민법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 이외의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재도구 등의 가정용 물건에 대한 선취분이나 혼인주택에 대한 거주권 등의 개별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존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부양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배우자상속제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 1.5 The problems with the contribution system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의 평등차원에서 마련된 기여분제도는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행위로 인정되는 실질적 규율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인정여부를 법원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생존배우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 2. Improvements for spouse inheritance

#### 2.1 Ways to expand shares of current spouse inheritance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존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비율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한 확보한 재산보다는 적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 되었던 것을 이혼 시에 재산분할과 똑같이 1/2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 1/2는 생존배우자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다.

#### 2.2 Ways to re-evaluation the housework for surviving spouses

최근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혼인공동생활 중에서 행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본인의 재산형성할 기회마저 희생해가면서 오직 가족들을 위한 행위로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다른 상속인들의 노력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3 Reorganization plan for inheritance rights of surviving spouses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혼인공동생활이 해소된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고령의 나이로 홀로 여생을 살아가야 할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하기 마련이다. 또한 성숙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은 옛날 농업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처럼 삭막한 현실속에서 홀로 남은 생존배우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권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본다.

#### 2.4 Ways to recognize housing rights for surviving spouses

주태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의 규정을 별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거주주택을 계속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심지어 그 주거용 부동산이 피상속의 소유일지라도 그 곳에서 생활활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태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 2.5 Explicit plans for statutory contributory Shares system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여분제도가 공평을 가치로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당연히 경제적 평가로 변경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전혀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인정하는 가사도동의 대가는 법원의 심판이나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마땅히 법률개정을 통하여 법정기여분으로 명시할 필요성 있다.

## Ⅴ. Conclusion

지금까지 가족법상 생존배우자 상속제도를 살펴보았듯이 생존배우자의 상속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상속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대가족중심의 사회에서 부부중심 핵가족사회로 변화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가족중심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는 방향으로 인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현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당연히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방향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배우자 상속분을 간단하게 5할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공평한 입장에서 상속재산을 1/2로 고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더불어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시점에서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생활 유지차원에서 생존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생존배우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권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배우자의 가사노동 대가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정기여분도 법률개정을 통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Ah-young Jo, “A Study on Spouse's Inheritance”,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p.2, 2016.

[2] Eun-ah Kim, “A Study on the status of a spouse in succession of property”,Hanyang University Ph.D. thesis, p.38, 2005.

[3] Seong-kyung Choi, “Surviving Spouse and the Right to the Preferential Benefit”, 「Law Study」 Vol. 38, No. 2, Dankook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133, 2014.

[4] Geum-suk Choi, “Gender Equality in Property Legislatio n”, 「Gender Equality and Legal System」, Ewha Woman s University Press Department, p.231, 1996.

[5] Jung-gyun Shin, “Study on Strengthening the Spouse's Inheritance Rights”,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12, 2019.

[6] Hwa-suk Le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Marital Property Relations”, Yonsei University Ph.D. thesis, p.267, 1988.

[7] Sanghee-Jo, “The Evolution or Perishment of the Forced Heirship and Legitime in Louisiana Legal System”, 「Ilkam Law Review」 No. 36, Konkuk University Law Institute, p.71, 2017.

[8] Jongyong-Park, “A Study on Spouse's Inheritance”, Dongguk University Ph.D. thesis, p.43, 2002.

[9] Won-ho Choi, “A Study on the Expansion of Spouse's Inheritance Rights”, Dongui University Ph.D. thesis, p.35, 2018.

[10] Mi-kyeong Jo, “Inheritance of spouse under German law”, 「Family Law Study」 Volume 14, Korean Family Law Association, p.248, 2000.